

## 대우교수규정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학칙 제70조 제4항에 의거하여 본 대학교의 대우교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자격)** 대우교수로 임용될 수 있는 자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조교수 이상 자격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  
(개정 2019.02.21.)

1. 본 대학교에서 전임교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교수로서 재직 중 본 대학교의 발전에 현저히 공헌한 자 (개정 2019.02.21.)
2. 다른 대학에서 정년퇴직한 교수 또는 본 대학교의 교육과 강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(개정 2014.08.12.)
3. 타 대학 연구교수 또는 박사후 연구원(Post-doc)경력(현직)자 (신설 2019.02.21.)
4. 대학 강의 경력 2년 이상자로서 해당 과목 강의 적격자 (신설 2019.02.21.)

**제3조(임용절차)** ①대우교수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임용한다. (개정 2015.06.16.)

1. 각 대학(원)장 추천 (신설 2015.06.16.)
2. 총장의 제청 (신설 2015.06.16.)
3. 이사장이 임용 (신설 2015.06.16.)

②대우교수로 추천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추천서 1통
2. 이력서 1통
3. 학위증명서(학사, 석사, 박사) 각 1통
4. 교육 및 연구경력증명서 각 1통
5. 주민등록등본 각 1통
6. 인사기록카드

3-2-8~2 제3편 행 정

7. 건강진단서(종합병원) 1부

**제4조**(임용기간) 대우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(개정 2013.02.27, 2015.06.16.)

**제5조**(대우) 대우교수의 봉급은 대우교수 봉급표(별표)에 의거하여 직급에 따라 상여금 없이 각 학년도초에 총장이 정한다.

**제6조**(강의담당시수) 대우교수의 강의담당시수는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3년 0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06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0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(별표) (개정 2013.02.27)

### 대우교수봉급표

| 직 급  | 봉 급 액 | 비 고 |
|------|-------|-----|
| 대우교수 |       |     |